

신고업무 접수창구

• 업무 담당자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
054-459-7942~8

• 신고업무 접수창구

- 무인비행장치 :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drone.onestop.go.kr)



- 무인비행장치 외 : APS 원스탑시스템
(www.onestop.go.kr:8050)



시스템 접수 이외 방법으로 접수 시 사전 공단에 문의

* e-mail, Fax(0502-384-5453),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방문 접수 : 공단 본사 및 전국 14개 지역본부

| 본부명 | 주소 |
|------|---|
| 본사 |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
| 서울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
| 경기남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
| 대전충남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
| 대구경북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
| 부산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
| 광주전남 |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
|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호원동) |
| 인천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F(간석동) |
| 강원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70(거두리) 만호빌딩 3F |
| 충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신봉동) |
| 전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항로 44(팔복동) |
| 경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릉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입타워 2층(팔용동) |
| 울산 | 울산 남구 변영로 90-1, 향사방 병원빌딩 7F(달동) |
| 제주 |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주요 FAQ

Q. 장치 신고 이후 처리 기간은?

A. 법정처리 기간은 7일이며,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 부터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재통지

Q.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2021.1.1.부터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기체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기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

Q. 장치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치를 직접 촬영한 사진,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소유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작증명서 등)

A. 해당소유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확인서 제출(서식은 드론원스탑-정보마당-공지사항 내 신고 관련 서식 게시글 확인)

Q. 영리, 비영리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리에 해당

A.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 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Q.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대상 및 금액은 ?

A. 가입의무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A. 가입금액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Q. 초경량비행장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 | |
|------------|---|-----------|--|
| 비행기 비행기 |  타면조종형 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  무인비행기 |
| |  체중이동형 비행장치 | |  무인헬리콥터 |
| |  비행기 | |  무인멀티콥터 |
| 비행기 비행기 |  비행기 | 무인비행선 |  무인비행선 |
| |  비행기 | |  초경량헬리콥터 |
| 비행기 비행기 |  비행기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 |  비행기 | | 각 장치별 세부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유자 및 비행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고 |
| 변경 신고 |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 |
| 이전 신고 |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 |
| 말소 신고 | 비행장치의 멸실 또는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하는 신고 |

신고업무 목적

- 체계적인 장치 신고 관리로 안전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국민 인명·재산 보호
- 기체별 고유번호 관리를 통한 향후 무인기 교통 관리, 드론 택시·택배 상용화 기여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 신고업무 | 제출서류 | 신고시기 |
|------------|--|--|
| 신규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 사진) | 신규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성인증 대상은 안전성인증 받기 전 신고 |
| 변경 및 이전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 신고서 *변경 및 이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변경·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말소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신고서 |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안전성 인증 대상

- 1 동력비행장치
- 2 회전익 비행장치
- 3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
- 4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 5 동력패러글라이더
- 6 자체중량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무인비행선
- 7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 헬기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신고대상

| 종류 | 영리 | 비영리 |
|-----------|----------------|---------------------------|
| 동력 비행 장치 | 타면조종형 비행장치 | 신고 |
| | 체중이동형 비행장치 | |
| 헬기라이더 | 신고 불필요 | |
| 패러글라이더 | | |
| 기구류 |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신고 | |
| 무인 비행 장치 | 신고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신고 |
| | | 자체중량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신고 |
| | | 신고 |
| 회전익 비행 장치 | 신고 | |
| 초경량 헬리콥터 | | |
| |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 동력패러글라이더 | 신고 불필요 | |
| 낙하산류 | | |

*영리 :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다음에 해당하는 비상업용 비행장치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1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2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3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절차



신고업무 관련 변경사항

- 업무 수행기관 : 각 지방항공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고접수 : 정부24 → 드론원스탑·APS원스탑 시스템 (2020년 12월 10일부터)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확대(2021년 1월 1일부터)
 - 자체중량 12kg 초과 기체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 *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기체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대상 확대(2020년 12월 10일부터)
 - (중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
 - (확대) 중전 가입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가입금액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신고 관련 벌칙조항

| 위반 사항 | 처벌 조항 | 처벌 기준 | |
|----------------------------|---------------------|----------------------------|--|
|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4항 제4호 | 과태료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 | | 과태료 | 1차 위반 15만원 2차 위반 22.5만원 3차 위반 30만원 |
| | | | |
|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1호 | 과태료 | |

이것만은 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전 신고
- 변경, 이전, 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 신고번호가 발급된 후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

원스탑시스템 이용 시 보다 쉽고 빠르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신고업무 관련 문의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로 문의
Tel. 054-459-7942~8

